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연구*

A Study on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곽건홍(Kwak, Kun-hong)**

1. 머리말
2.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구성
 - 1) 임기
 - 2) 위원 구성
3.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 1) 위원회 심의안건 분석
 - 2) 위원회 보고안건 분석
4.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의 운영
 - 1) 전자기록관리전문위원회
 - 2) 기록서비스전문위원회
 - 3) 정책전문위원회
 - 4) 표준전문위원회
 - 5)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5. 맺음말

* 이 논문은 2018년도 한남대학교 교비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인문학부 사학전공 부교수,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

■ 투고일: 2018년 10월 2일 ■ 최초 심사일: 2018년 10월 10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10월 17일

〈초록〉

이 글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설치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위원회 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는 기록관리법에서 규정한 특정 안건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은 물론 보고안건도 대부분 국가기록원 고유 업무 중심이었다. 그 결과 위원회는 국가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국가기록원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했다.

주제어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국가기록원, 아카이브

〈Abstract〉

This article analyses 10 years of the operation condition of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since its constitution. The object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its evaluation. The Committee deliberated specific issues defined by records management act. The issues and the reports were concentrated on the task of the National Archives. As a consequence, the Committee could not play a role as a governance organization but as merely a consultative body of the National Archives.

Keywords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Committe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rchives

1. 머리말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7년 9월 참여정부 기록관리 혁신의 결과로 설치되었지만,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상을 갖는 위원회의 한계는 출범 당시부터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 곧 참여정부 기록관리 혁

신 과정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는 조직 혁신 모형으로 기록관리·기록편찬·정보공개 정책 기능을 아우르는 「국가역사 기록위원회」를 제안했지만(곽건홍 2014), 현재의 위원회는 기록관리와 관련된 일부 기능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기록관리 혁신의 결과로 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일정한 진전을 의미했으나, 당시 국가 기록관리위원회 설치에 기록관리 혁신의 후퇴로 받아들여졌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집권 시기에는 기록관리 혁신의 퇴조와 함께 위원회 위원 구성의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위원회 운영의 비민주성이 지적되었다(곽건홍 2014). 곧 이 시기에 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물론 회의록 등은 비공개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기본적인 활동을 이해하는 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년 8월말 국가기록원이 입법예고 한 기록관리법 개정안 또한 위원회의 근본적인 혁신과는 상당한 거리가 존재한다. 곧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국가 기록관리 주요 전략 및 정책 심의, 위원 수 확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대통령기록관장의 당연직 위원 포함, 부위원장 신설” 등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국가기록원 2018).

기록학계는 그동안 국가 기록관리 체계 개혁 방향의 조직 형태로 제기된 합의제 행정위원회 모형에 관심을 두었다(곽건홍 2014). 이에 대한 논의는 최근까지도 여러 계기로 지속되고 있지만,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대한 연구는 석사학위논문 1편뿐이다(정대영 2015). 또한 지난 10년 동안 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원회 자체 평가는 물론 국가기록원, 기록학계 등 어디에서도 평가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무관심’은 기록공동체 내에서 그동안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미미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글의 연구목적은 위원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위원회의 주요 활동인 심의 안건 분석과 운영 방식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할 것이다.

금년 7월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기록관리 거버넌스 발전 특별위원회」

(이하 특별위원회)를 최초로 설치하고, 위원회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특별위원회는 12월 말까지 보고서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올바른 대안 모색 과정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난 10년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평가 기준과 혁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 연구를 통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2.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구성

1) 임기

제1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2007년 9월 구성되어 2010년 9월까지 운영되었다. 제2기는 2010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제3기는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운영되었다. 현재의 제4기 위원회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가 임기이다. 한편 2018년 초 제4기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이 사퇴하였으며, 같은 해 5월 8일 새롭게 위원장과 위원 4명이 위촉되었다.

이 글은 제4기 위원회가 재구성되기 전까지의 시기인 2018년 5월 7일까지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다.

2) 위원 구성

제1기부터 제4기까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은 총 55명이었다(연임 위원 포함). 위촉직 위원의 분포는 학계 44명(80%), 기관 9명(16.4%), 기업 2명(3.6%)이다. 학계에 기반을 둔 위원 수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기관에 적을 둔 위원은 6명으로 정보·보안 관련 기관이 대부분이었다. 학계에서는 역사학 13명(23.6%), 문헌정보학 13명(23.6%), 컴퓨터공학 4명

(7.3%), 법학 4명(7.3%), 행정학 3명(5.5%), 정치학 3명(5.5%), 기타 4명(7.3%)이 참여하였다. 학계에서는 특히 역사학·문헌정보학에 학문적 배경을 둔 위원이 전체의 50%에 육박했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기록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문 분야에 집중되었다.

〈표 1〉 위촉직 위원 구성(2018. 5. 7. 현재, 단위: 명)

		1기	2기	3기	4기
학계	역사학	6	2	2	3
	문헌정보학	2	4	4	3
	행정학	1	1		1
	법학	1	1	1	1
	정치학		1	1	1
	컴퓨터공학	2	1		1
	철학		1		
	화학		1		
	경영학				1
	문화재보존학				1
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			
	한국정보화진흥원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	
	한국정보화진흥원			1	1
	한국전력기술			1	
기업				1	1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
	합계	14	13	13	15

※비고: 위원장 포함, 당연직 위원 제외.

한편 위촉직 위원들의 기록학 관련 연구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 연구자정보시스템(<https://www.kri.go.kr/kri2>)에서 검색하였다(검색일 2018년 8월 23일). 기록관리·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등을 포함한 기록학 관련 논문 1편 이상 실적이 있는 위원은 전체 22명(40%)이었다. 제1기 위원의 경우 14명 중 9명(64.3%), 제2기 13명 중 5명(38.5%), 제3기 14명 중 4명(28.6%), 제4기 15명 중 4명(26.7%) 등이었다. 제1기의 경우 위원 다수가 기록학 관련 논

문 실적을 갖추고 있으나, 그 이후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2018. 5. 7. 현재, 단위: 명)

	소계	대통령기록전문위				정책전문위				표준전문위				전자기록전문위				기록서비스전문위					
		1기	2기	3기	4기	1기	2기	3기	4기	1기	2기	3기	4기	1기	2기	3기	4기	1기	2기	3기	4기		
학계	역사학	42	2	3	3	2	2	3	3	5	2	1	2	1	2				4	3	3	1	
	문헌정보학	38	3	2	3	2		2	3	1	4	4	3	2	2	1		1	1	3	1		
	행정학	4								1	2	1											
	법학	5					1	1	1	1					1								
	정치학	8	2	2		1			1												1	1	
	컴퓨터공학	18									1	3	2		2	1	5	4					
	교육학	2	1	1																			
	경영학	4					1								1	1	1						
	철학	2																		1	1		
	기록학	3											1	1			1						
	문화콘텐츠학	2																			1	1	
	방송영상학	1																				1	
	광고디자인	1																					1
	기관	지방행정 연구원	2	1				1															
국회기록 보존소		1					1																
한국정보 사회진흥원		1												1									
한국정보화 진흥원		6		1	1	1									1	1	1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1														1							
국가정보원		1													1								
국가안보전략 연구소		1						1															
대한민국역사 박물관		1																					1
헌법재판소		1																		1			
선거관리 위원회		1																		1			
법률사무소		2			1	1																	
알권리연구소		1				1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1															1						
한국광물 자원공사		1													1								
한국콘텐츠 진흥원	1																					1	
기업	7									1	1	1	1		2	1							
당연직	15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합계	171	10	10	9	9	7	8	9	9	11	10	9	9	8	6	9	9	8	8	8	8	8	

※비고: 전자기록전문위원회의 경우 제1기는 시스템/프로세스전문위원회임.
기록서비스전문위원회는 제1기 및 제3기는 기록서비스/역사기록전문위원회임.

제1~제4기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한 인원은 총 174명이었다. 그 가운데 학계에 기반을 둔 전문위원은 130명(74.7%), 기관 22명(12.7%), 당연직 15명(8.6%), 기업 7명(4.0%)으로 구성되었다. 곧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구성과 유사하며, 학계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학문 분야를 살펴보면, 학계에 기반을 둔 전문위원 130명 가운데 역사학 42명(32.3%), 문헌정보학 38명(29.2%), 컴퓨터공학 18명(13.8%) 등의 순서로 비율이 높았다. 역사학·문헌정보학 분야의 전문위원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기록학 관련 논문 1편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전문위원은 전체 전문위원 가운데 70명(40.9%)이었다. 제1기는 44명 중 22명(50.0%), 제2기 42명 중 18명(42.9%), 제3기 44명 중 15명(34.1%), 제4기 44명 중 15명(34.0%) 등이었다. 제1기에 비해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위원회 별로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38명 중 11명(28.9%), 정책전문위원회 33명 중 14명(42.4%), 표준전문위원회 39명 중 27명(69.2%), 전자기록전문위원회 32명 중 12명(37.5%), 기록서비스전문위원회 32명 중 7명(21.9%) 등이었다. 표준전문위원회의 경우 기록학 관련 논문 실적을 갖춘 전문위원 비율이 매우 높았다.

3.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 심의안건 분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 사항
4.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5.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6.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또한 시행령 63조에서는 기록관리 평가 계획과 기록관리 현황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3〉 제1기 위원회 심의안건

기수	회차	심의안건	의결 사항	비고
1기	정기 1 (07.9)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안)	차기회의 재상정	6호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전문위원회 심의 후 재상정 의결	2호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차기회의 재상정	
	임시 1 (07.11)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안)	차기회의 재상정	
		전문위원회 구성 방안	승인 의결	
	정기 2 (07.12)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승인 의결	2호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승인 의결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안)	차기회의 재상정	6호
	정기 3 (08.3)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승인 의결	2호
		08년 기록관리 현황평가 계획안 심의	의결	시행령 63조
		08년 기록관리 표준화 세부추진계획 심의	의결	2호
	정기 4 (08.6)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심의(안)	의결	6호
		국가기록관리위와 대통령기록관리위 통합방안	재상정	
	임시 2 (08.7)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연장 심의	의결	5호
		08년도 기록관리현황평가 대상기관 조정	의결	시행령 63조
		공공기록물법 개정 검토사항	조건부 의결	1호
	정기 5 (08.10)	기록관리현황평가 직접평가대상기관 결과 심의	의결	시행령 63조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2건 심의		의결	6호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연장 심의		의결	5호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심의		수정안 의결	2호	
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대상 기록관리시스템 확산 기본계획		의결	1호	

정기 6 (08.12)	민간기록 수집 및 국가지정기록물 운영규정 제정안	의결	6호
	08년도 기록관리 표준 제정안	조건부 의결	2호
	07년도 기록관리현황 자체진단 평가결과	의결	시행령 63조
정기 7 (09.3)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비공개 연장심의	의결	5호
	국가기록관리 선진화전략 종합실천계획(안) 보고	의결	1호
	09년도 기록관리 표준화 추진계획(안) 심의	의결	2호
정기 8 (09.6)	09년도 기록관리현황 평가계획(안) 심의	의결	시행령 63조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비공개 연장 심의	의결	5호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비공개 연장 심의(일반기록물, 대통령관련 기록물)	의결(비공개 상한제도 도입 필요)	5호
정기 9 (09.9)	09년도 제1차 기록관리 표준제 개정(안)	원안 통과	2호
	09년도 기록관리 현황 평가 결과	원안 통과	시행령 63조
정기 10 (09.12)	09년도 제2차 기록관리표준 제 개정안 심의	원안 통과	2호
	30년 경과 비공개 및 미분류 기록물 재분류(일반기록물/대통령관련기록물)	재심의 안건 제외한 원안 통과	5호
	임시 3 (10.2)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 관련 현안 보고안건으로 논의	-
정기 11 (10.4)	10년도 기록관리표준화 계획(안)	원안 통과	2호
	10년 기록관리현황평가 계획(안)	원안 통과	시행령 63조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비공개기간 연장	원안 통과	5호
	정부기록물분야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 추진계획	원안 통과: 3건 부결: 3건	1호
정기 12 (10.8)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결과보고	*모 존기간 1, 3년 기록 폐기절차 간소화(부결)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요건 완화(부결)	1호
정기 13 (10.9)	2010년도 제1차 기록관리 표준 제 개정(안)	원안 의결	2호
	2010년도 기록관리평가 결과 보고	원안 의결	시행령 63조

※주: 국가기록원, 각 회차별 회의 결과를 참고해서 제작성함.

제1기 위원회는 정기회의 13회, 임시회의 3회를 개최하였다. 제3회 임시회의는 전문요원 자격 완화, 기록 폐기제도 간소화 등 제도관련 현안을 보고안건으로 채택하였다. 제1기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전체 41건이었다. 1호 5건, 2호 11건, 5호 7건, 6호 5건, 시행령 63조 기록관리 평가 관련 8건, 기타 위원회 운영규정 관련 3건, 전문위원회 구성 방안 1건, 위원회 통합 방안 1건 등이었다. 특히 1호 기록관리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법령 개정, 기록관리시스템 확산, 국가기록관리 선진화전략 등이었다. 2호 및 시행령 63조 관련 안건이 전체의 46.3%를 차지했다.

〈표 4〉 제2기 위원회 심의안건

기수	회차	심의안건	의결 사항	비고
2기	정기 14 (10.12)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조건부 의결	
		2010년도 제2차 표준제개정안	조건부 의결	2호
		2011년도 기록관리현황평가 계획 보고	원안 의결	시행령 63조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 비공개 연장 심의(일반기록물)	원안 의결	5호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비공개 연장 심의(대통령관련 기록물)	원안 의결	5호
		30년 경과 기록물 이관 연장심의	원안 의결	5호
	정기 15 (11.3)	2011년 기록관리 표준화 추진계획	원안 의결	2호
		2012년도 기록관리 평가지표 개선안	수정 의결	시행령 63조
	서면심의 (11.1)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 의견 수렴	동의 12, 부동의 1	
	서면심의 (11.4)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 계획(안)	원안의결	1호
	정기 16 (11.6)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심의	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은 재심의, 그 외 원안의결	5호
	정기 20 (11.9)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심의	원안 의결 및 수정 의결	5호
		2011년 제1차 기록관리 표준 개정·폐지(안)	원안 의결	2호
		2011년 기록관리 평가 결과(안)	원안 의결	시행령 63조
	정기 21 (11.12)	2011년도 제2차 기록관리 표준 개정(안)	원안 의결	2호
		2012년 기록관리 평가계획(안)	원안 의결	시행령 63조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심의	원안 의결	6호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심의	원안 의결	5호
	정기 22 (12.3)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원안 의결	5호
		2012년도 표준화 추진계획(안)	원안 의결	2호
		비밀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원안 의결	2호
		기록물법 개정에 따른 공공표준 개정(안)	원안 의결	2호
		2013년 기록관리 평가지표(안)	원안 의결	2호
	정기 23 (12.6)	기록경영시스템(ISO 30300/30301) 국가표준(안)	원안 의결	2호
	정기 24 (12.9)	2012년도 기록관리 평가결과(안)	원안 의결	시행령 63조
2012년 제2차 기록관리 표준 제개정 폐지(안)		원안 의결	2호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심의(안)		원안 의결	5호	
정기 25 (12.12)	2013년도 기록관리 평가계획(안)	원안 의결	시행령 63조	
	2012년 하반기 기록관리 표준 제개정(안)	원안 의결	2호	
	2013년 기록관리 표준화 계획(안)	원안 의결	2호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안)	원안 의결	5호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안)	원안 의결	5호	

정기 26 (13.3)	2014년 기록관리 평가지표(안)	원안 의결	시행령 63조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안)	원안 의결	6호
정기 27 (13.6)	2013년도 제1차 기록관리 공공표준 제개정(안)	원안 의결	2호
정기 28 (13.10)	2013년 기록관리 평가 결과(안)	원안 의결	시행령 63조
	2013년도 제2차 기록관리 공공표준 제정(안)	원안 의결	2호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안)	원안 의결	5호

※주: 국가기록원, 각 회차별 회의 결과를 참고해서 제작성함.

제2기 위원회는 정기회의 12회, 서면심의 2회를 개최하였다. 서면심의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 등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제2기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전체 39건이었다. 1호 1건, 2호 14건, 5호 12건, 6호 2건, 시행령 63조 기록관리 평가 관련 8건, 기타 2건 등이었다. 2호 및 5호 관련 심의가 66.6%를 차지했다.

한편 제14회 정기회의에서는 심의 의결의 구속력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었다. 곧 '심의 의결은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행정청은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국가기록원 2010.12). 이는 국가 기록관리위원회의 한계와 관련해서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표 5〉 제3기 위원회 심의안건

기수	회차	심의안건	의결 사항	비고
3(13.12 ~16.12)	정기 29 (13.12)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심의(안)	원안 의결	5호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안)	원안 의결	6호
		2013년 제3차 기록관리 공공표준 제개정(안)	원안 의결	2호
		비공개·미분류기록물 공개재분류 심의	원안 의결	5호
		2014년 기록관리 표준화 계획(안)	원안 의결	2호
	정기 30 (14.3)	2014년 기록관리 평가 계획(안)	원안 의결	시행령 63조
		2015년도 기록관리 평가지표(안)	원안 의결	시행령 63조
	정기 31 (14.6)	2014년도 제1차 기록관리 공공표준 제개정(안)	원안 의결	2호
		경찰청 수사자료표의 매체수록 후 폐기(안) 1) 매체수록 완료한 수사자료표 원본 폐기 2) 폐기대상 중 일부 기록물 국가기록원에 선별 보존	1) 원안 의결 2) 조건부 의결	5호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안)	원안의결	6호
정기 32 (14.9)		수사자료표 선별모순 대상 선정(안)	원안의결	5호
		2014년도 기록관리 평가 결과 보고	원안의결	시행령 63조
정기 33 (14.12)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안)	원안의결	5호
		2014년 제2차 기록관리 공공표준 제개정(안)	원안의결	2호
		2015년 기록관리 표준화 계획(안)	원안의결	2호
		2015년도 기록관리 평가계획(안)	원안의결	시행령 63조
정기 34 (15.2)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안)	원안의결	5호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일부수정 후 의결	
	임시 1 (15.4)	심의안건 없음		
정기 35 (15.6)		2016년(15년 실적) 기록관리 기관평가 지표(안)	원안의결	시행령 63조
정기 36 (15.10)		2015년 제1차 기록관리 공공표준 개정(안)	원안의결	2호
		2015년도(14년 실적) 기록관리 기관평가 결과(안)	원안의결	시행령 63조
정기 37 (15.12)		2015년도 제2차 기록관리 공공표준 제개정(안)	원안의결	2호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안)	원안의결	5호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심의(안)	원안의결	6호
		2016년도(15년 실적) 기록관리 기관평가 계획(안)	원안의결	시행령 63조
		특수기록관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심의(안)	원안의결	5호
		2015년도 제3차 기록물관리 공공표준 제개정(안)	원안의결	2호
정기 38 (16.3)		2016년도 기록관리 표준화 계획(안)	원안의결	2호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심의	원안의결	5호
정기 39 (16.7)		2017년도 기록관리 평가지표(안) 심의	원안의결	시행령 63조
		2016년도 기록관리 평가결과 보고(안) 심의	원안의결	시행령 63조
정기 40 (16.10)		2016년 제1차 기록물관리 공공표준 개정·폐지(안) 심의	원안의결	2호
		2016년 제1차 기록물관리 공공표준 개정(안)	원안의결	2호
정기 41 (16.12)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의 건	원안의결	5호
		특수기록관 비공개기록물 이관 연장 심의(안)	원안의결	5호
		2017년 기록관리 표준화 추진계획 등	원안의결	2호
		2017년(16년 실적) 기록관리 평가계획(안)	원안의결	시행령 63조

※주: 국가기록원, 각 회차별 회의 결과를 참고해서 제작성함.

제3기 위원회는 정기회의 13회, 임시회의 1회를 개최하였다. 제3기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전체 37건이었다. 2호 12건, 5호 12건, 6호 3건, 기타

1건, 시행령 63조 기록관리 평가 관련 9건 등이었다. 2호 및 5호 관련 심의가 64.9%를 차지했다. 이 시기에 이르면 위원회 심의안건은 2호, 5호 위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제4기 위원회 심의안건

기수	회차	심의안건	의결 사항	비고
4기	정기 42 (17.1)	심의안건 없음		
	정기 43 (17.6)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안)	원안의결	5호
	임시 1 (17.7)	심의안건 없음		
	정기4 4 (17.9)	2017년 제1차 기록물관리 공공표준 개정(안)	원안의결	2호
		30년 경과 기록물 비공개 기간 연장(안)	원안의결	5호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부결	
	정기 45 (17.12)	특수기록관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이관 연장(안)	원안의결	5호
		2017년 제2차 기록물관리 공공표준 개정·폐지(안)	원안의결	2호
		30년 경과 기록물 비공개 기간 연장(안)	원안의결	5호
	정기 46 (18.2)	2018년 기록관리 표준화 계획(안)	원안의결	2호
2018년 기록관리 평가계획(안) (제1안) 기관평가 실시유예 (제2안) 기관별 평가선택		부결	시행령 63조	

※주: 국가기록원, 각 회차별 회의 결과를 참고해서 제작성함.

제4기 위원회는 2018년 5월까지 정기회의 5회, 임시회의 1회를 개최하였다. 심의 안건은 8건이었으며, 2호 3건, 5호 4건, 시행령 63조 기록관리 평가 관련 1건 등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위원회 운영 방식과 심의안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는 대부분 정기회의 위주로 운영되었다. 기록관리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분기별로 개최되었다. 임시회의는 총 5회, 서면심의회는 2회 개최되었다. 임시회의의 경우 보고안건 위주로 회의를 운영하였다. 기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임시회는 10년 동안 고

작 5회만 개최되었다. 곧 회의 운영은 국가기록원의 회의 소집 요구에 따라 매우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국가기록관리 혁신 T/F 2017, 49).

둘째, 전체 심의안건은 125건이었으며, 그 가운데 1호 관련 심의는 6건(4.8%), 2호 40건(32.0%), 5호 35건(28.0%), 6호 10건(8.0%), 시행령 63조 기록관리 평가 관련 26건(20.8%) 등이었다. 2호, 5호, 시행령 63조 관련 안건이 전체의 80.8%를 차지했다. 곧 특정 안건 심의 위주로 위원회가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심의 의결 결과 ‘원안 의결’된 경우는 제1기 위원회에 비해 제2기, 3기로 올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제1기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차기회의 재상정’, ‘재상정’, ‘조건부 의결’, ‘수정안 의결’ 등으로 다양했으나, 이후에는 대부분 ‘원안 의결’ 중심으로 의결되었다.

넷째, 기록관리법에서 위원회 기능으로 규정했으나,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 조항도 존재했다. 곧 기본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심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기본정책의 수립이 어느 범위까지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록평가정책·기록서비스정책 등 기록관리 프로세스별 정책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국가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해서는 전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섯째, 비록 기록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한 것이지만, 국가기록원이 수행하는 고유 업무를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다. 곧 비공개 기록의 공개 및 이관시기 연장, 기록관리 평가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은 “국가 차원의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라기보다 국가기록원 수행업무를 심의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국가기록관리 혁신 T/F의 지적은 타당하다(국가기록관리 혁신 T/F 2017, 48). 곧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국가기록원의 자문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여섯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혁신은 결국 국가 기록관리 거버넌스 체계의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헌법기록물관리

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민간 기록관 등 다양한 아카이브와의 협력 모형을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2) 위원회 보고안건 분석

위원회 설치 이후 위원회에 보고된 안건은 <표 7>과 같다.

<표 7> 위원회 보고안건 현황

	보고안건 제목
위원회 운영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의견청취결과 검토보고 -제4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계획
기록관리 정책	-07년도 기록관리 혁신 추진상황 보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기록관리혁신 추진경과” -기록관리 연구개발 사업 중장기 발전 방안 -2012년 기록관리 교육훈련 기본계획 -2012년 민간기록물 수집·관리계획 -국가기록관리 중장기계획 추진경과 보고(2014.6) -기록관리 혁신계획 보고
기록관리 현황 평가	-07년도 기록관리 평가 시범 운영 결과보고 -2017년 기록관리 평가체계 개선(안)보고 -17년도 기록관리 기관평가 결과(안)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력	-국가기록원·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교류·협력 방안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 현황보고 -국회기록보존소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가기록원 업무 프로세스 관련	-08년 주요 업무계획 -2010년 국가기록원 주요 업무계획 -2012년 국가기록원 주요업무계획 보고 -국가기록원 주요 현황 및 업무보고(2010.12) -국가기록물 3개 서고 간 재배체 사업 계획 보고 -기록관리 부처전담제 운영방안 -중앙행정기관 기록물담당자 간담회 개최에 따른 건의사항 -주요 사업 현안보고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대상회의 추가 지정 보고 -과거사위원회 기록물 이관·관리방안 -비공개 상한제도 추진계획 보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지원 컨설팅 결과 보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 관련 현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제도 운영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년 경과 기록물 이관 추진상황 보고 -2011년도 해외기록물 수집계획 보고 -중간기록관리시설 추진현황 -대한민국 대통령기록관 설치계획(안) 보고 -전자기록물 이관대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생산의무 회의 지정 보고 -광주기록정보센터 확대 설치계획 -국정분야별 검색서비스 현황 및 개선방안 -이용자 유형을 고려한 기록콘텐츠 개발 계획 -RMS 개선 및 보급 추진상황 보고 -2015년도 공공기록물법령 제도개선 추진계획(안) -기록물보존 등 일부 업무에 대한 제3의 시설 사용 관련 검토 -기록관리시스템 TO-BE 모델(안) 보고 -2016년 업무 추진계획(안) 보고(조직개편안 포함) -조선총독부에 대한 기관 명칭의 적정성 등 검토 -우선 복원대상 기록물 선정 -2017 국가기록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전자기록 기술정보 수집·활용체계 구축 -소셜방송 기록 ON 운영현황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결과 -국가기록관리 혁신TF 구성 운영계획 -부산기록관 현황과 발전과제(부산기록관에서 회의 개최) -30년 경과 기록물 비공개 유형별 공개재분류 기준(안) -2018년 국가기록원 업무계획(안) -2018년 상반기 업무계획 추진 상황 -기록관리 혁신추진단 업무 추진 상황
<p style="text-align: center;">각종 행사 보고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라기록관 개관 행사 계획 -건국 60주년기념 국가기록 특별전신회 개최계획 보고 -2010 국제기록문화전신회 추진상황 -국제학술회의 및 EASTICA 세미나 보고 -2016년 ICA총회 유치계획안 -2016 ICA 서울총회 기본계획 보고 -2016 IC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계획(안) -2016년도 ICA 서울총회 추진상황 보고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광복 70년 기념사업 보고

※주: 국가기록원, 각 회사별 회의 결과를 참고해서 제작성함.

위원회에 보고된 보고안건 역시 철저하게 국가기록원 업무 중심으로 상정되었다. 첫째, 국가기록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사안들이 대부분 보고안건으로 채택되었다. 둘째, 위원회의 심의안건이라고 할 수 있는 “2012 기록관리 교육훈련 기본계획”,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추진경과 보고” 등이 보고

안건으로 처리되었다. 셋째, 국가기록원 업무계획 등도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 넷째,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해서는 단 세 차례 보고되었다. 곧 심의안건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역할은 매우 미흡하였다.

4.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의 운영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산하에는 5개의 전문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이다. 2018년 7월에는 최초로 「기록관리 거버넌스 발전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국가 기록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래에서는 제1기 위원회 출범 이후 2018년 5월까지 5개 전문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서술하였다.

1) 전자기록관리전문위원회

〈표 8〉 전자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

회차	일시	주요 논의 사항
1	2008.2	전문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정부조직개편 관련 전자기록물 이관대책
2	2008.9	기록관리시스템(RMS) 기본계획 보고 전자기록물 관련 기술규격 보고
3	2010.1	'09년도 기록정보화 추진실적 평가 및 '10년도 추진방향 '10년도 기록정보화 현안사항 논의
4	2014.6	전자기록물관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15년 전자기록물 이관 준비 상황 보고 등
5	2017.5	전자기록관리 관련 주요 추진사항 논의 -클라우드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확산 현황 등
6	2017.11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전자기록 기술정보 수집·활용 체계 구축 추진현황 등

※주: 국가기록원, 「각 회차 시스템·프로세스전문위원회 회의결과」, 「각 회차 전자기록관리전문위원회 회의결과」 참고.

전자기록관리전문위원회는 2018년 5월까지 단 6차례만 개최되었다. 설치 초기는 시스템·프로세스 전문위원회였으나, 제4회 회의부터 전자기록전문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회의는 부정기적으로 개최되었으며, 회의를 전혀 개최되지 않은 연도도 여러 해에 걸쳐있다. 새로운 기록 생산 환경에 조응하는 전자기록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전자기록관리전문위원회는 시대적 흐름을 외면했다. 전문위원회 가운데 가장 유명무실한 위원회라 평가할 수 있다.

2) 기록서비스전문위원회

〈표 9〉 기록서비스 전문위원회의 운영

회차	일시	안건
1		-국가지정대상기록물 심의(서면심의)
2	2008.1	-국가지정기록물 지정관련 운영 방안 및 기준 논의 -기록서비스·역사기록 전문위원회의 운영방향
3	2008.12	-민간기록 수집 및 국가기록물지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안) (서면심의)
4	2011.10	-국가지정기록물 후보 기록물 지정 타당성 심의
5	2013.3	-국가지정기록물 후보 기록물 지정 타당성 심의
6	2013.11	-국가지정기록물 후보 기록물 지정 타당성 심의
7	2014.5	-국가지정기록물 후보 기록물 지정 타당성 심의
8	2014.11	-국가지정기록물 후보 기록물 지정 타당성 검토·심의
9	2015.12	-국가지정기록물 후보 기록물 지정 타당성 검토·심의
10	2017.7	-'17년 기록서비스부 업무계획 -국가기록박물관 건립 관련 추진상황 -기록사랑마를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
11	2017.10	-「기록콘텐츠 나도 한마디」 온라인 이벤트 관련 추진상황 -기록사랑마를 관리체계 개선 방안 보고
12	2018.1	-'18년 기록서비스부 업무계획 보고 -기록서비스부 중점과제 논의

※주: 국가기록원, 「각 회차 기록서비스전문위원회 회의록」 참고.

기록서비스 전문위원회는 총 12회 개최되었다. 주요 안건은 9회까지는 대체로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관련 심의를 위주로 하였다. 최근에는 주로

기록서비스부의 업무계획 등을 심의하고 있다. 2018년 7월에 개최된 13회 회의에서도 안건은 「18년 기록서비스부 중점과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등이었다.

3) 정책전문위원회

〈표 10〉 정책전문위원회의 운영

회차	일시	안건
1	2008.2	-2008년 주요 업무계획 -2008년 기록관리 현황평가 계획 보고 등
2	2008.7	-기록관리현황평가 계획 수정(안) 심의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 검토 사항 등
3	2008.9	-기록관리현황평가 직접평가대상기관 결과 심의
4	2009.3	-2009년 기록관리현황 평가계획(안) -국가기록관리 선진화전략 종합실천계획(안)
5	2009.9	-2009년 기록관리현황 평가결과
6	2010.2	-2010년 기록관리현황 평가계획(안)
7	2010.9	-2010년 기록관리 평가결과(안)
8	2011.3	-2012년 기록관리 평가지표(안)
9	2011.8	-2011년 기록관리 평가 결과(안)
10	2011.12	-2012년 기록관리 평가계획(안)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이관 연장 심의(특수기록관리과 별도 보고)
11	2012.3	-2012년 기록관리 평가지표(안) -2012년 기록관리 교육훈련 계획 및 2012년 민간기록물 수집·관리계획(별도 보고)
12	2012.9	-2012년 기록관리 평가 결과(안)
13	2012.12	-2013년 기록관리 평가 계획(안)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이관 연장 심의(특수기록관리과 별도 보고)
14	2013.3	-2014년 기록관리 평가지표(안)
15	2013.9	-2013년 기록관리 평가결과(안)
16	2014.3	-2015년도 기록관리 평가지표(안)
17	2014.5	-2016년 IC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계획(안) -기록경영인증제 검토의견 보고
18	2014.9	-2014년도 기록관리 평가결과 보고(안)
19	2014.11	-2015년 기록관리 평가계획(안) 등
20	2015.6	-2016년도 기록관리 평가지표(안) -기록관리 기관평가 업무 제도개선(안)
21	2015.9	-2015년도 기록관리 평가결과 보고(안)

22	2015.12	-2016년도 기록관리 평가계획 보고(안) -2017년 기록관리 기관평가 개선(안) 등
23	2016.3	-2017년도 기록관리 평가지표(안)
24	2016.7	-2016년도 기록관리 평가결과 보고(안)
25	2016.12	-2016년도 기록관리 평가계획 보고(안)
26	2017.7	-'17년도 기록관리 평가 결과(안)
27	2017.12	-특수기록관 비공개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안)
28	2018.1	-'18년 기록관리 평가 계획(안) * 국가기록원에서 제기한 기록관리 평가 유예 문제에 대한 심의결과는 부결되었음

※주: 국가기록원, 「각 회차 정책전문위원회 개최결과」 참고.

정책전문위원회는 총 28회, 연평균 약 3회 개최되었다. 정책전문위원회는 대체로 기록관리법 시행령 제63조에서 규정한 기록관리 현황 평가를 위주로 심의하였다.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이관 이관 연장 심의’, ‘기록경영 인증제 검토의견 보고’ 등 일부 안건을 제외하면, 기록관리 현황 평가에 대한 심의가 대부분이었다.

4) 표준전문위원회

〈표 11〉 표준전문위원회의 운영

회차	일시	안건
2013년도 제1회	2013.5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지침 제정(안)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개정(안)
2013년도 제2회	2013.8	-전자문서시스템 기록관리 상세 기능요건(안)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안)
2013년도 제3회	2013.11	-'13년 제3차 공공표준 제·개정안 -'14년 기록관리 표준화 계획
2014년도 제1회	-	-논의 사항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정책전문위원회와 표준전문위원회의 역할 논의 등
2014년도 제2회	2014.6	-'14년 제1차 기록관리 공공표준 제·개정안(심의) -기록경영인증제 도입방안 검토 보고(보고)
2014년도 제3회	2014.11	-'14년 제2차 기록관리 공공표준 제·개정안 -2015년 기록관리 표준화 계획안
2015년도 제1회	2015.5	-'15년 제1차 기록관리 공공표준 개정안

2015년도 제2회	2015.9	- '15년 제2차 기록관리 공공표준 제·개정안
2015년도 제3회	2015.11	- '15년 제3차 기록관리 공공표준 제·개정안 - 2016년 기록관리 표준화 계획안
2016년도 제1회	2016.6	- '16년 제1차 기록관리 공공표준 개정·폐지안
2016년도 제2회	2016.8	- '16년 제1차 기록관리 공공표준 개정안
2016년도 제3회	2016.12	- 기록관리 표준 정비 및 중장기 발전전략(안) - 2017년 기록관리 표준화 계획(안)
2017년도 제1회	-	- 표준화 정비계획 등 논의 * 일시 등 회의결과 내용 없음
2017년도 제2회	2017.8	- '17년 제1차 기록관리 공공표준 개정안
2017년도 제3회	2017.11	- 교육(지원)청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제정) 안 등

※주: 국가기록원, 「각 회차 표준전문위원회 회의록」 참고.

제1기 위원회 이후 2012년까지의 표준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입수하지 못한 관계로 여기에서는 2013년 이후 회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표준전문위원회는 총 35회 개최되어 전문위원회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대체로 공공표준 제정·개정안 위주로 심의하였다.

5)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기능은 대통령기록관리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전직 대통령의 열람에 관한 기본정책
2.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의 승인
3.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4.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5.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

〈표 11〉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

회차	일시	심의안건	의결사항	비고
1	2009.10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세부운영계획 -대통령 경호관련 기록물 이관 시기 연장 -2년 주기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원안통과	- 2호 4호
2	2010.3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보존기간 미책정 이관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책정 -대통령기록물 학술연구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 마스터플랜 마련 후 보고 예정)	원안통과	- 6호 6호
3	2010.6	-보존기간 만료 한시기록물(19권) 폐기 심의	원안의결	2호
4	2010.12	-보존기간 만료 한시기록물(19권) 폐기 재심의	원안의결	2호
5	2011.12	-비밀기록물 재분류 및 공개재분류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비공개 연장	원안의결	4호 4호
6	2012.6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전시설계(안)	원안의결	6호
7	2012.9	-대통령 경호 관련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안) 심의 -미분류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심의	원안의결	2호 4호
8	2012.11	-16대 미분류 시청각기록물(55건) 재분류 심의(안)	원안의결 (서면심의)	4호
9	2012.12	-제16대 공개미분류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재분류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비공개 연장 및 비밀기록물 공개재분류 심의	일부수정 의결 원안의결	4호 4호
10	2013.2	-대통령 경호관련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원안의결	2호
11	2013.5	-대통령 경호 관련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원안 의결	2호
12	2013.9	-16대 이관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재분류 심의 -30년 경과 미분류 기록물 공개재분류 심의	원안의결 일부 수정의결	4호 4호
13	2013.12	-대통령기록관 현판교체 심의 -대통령기록물 연구비용 지원 심의 -16대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심의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심의 -16대·G20 비밀기록물 재분류 및 공개재분류 심의	심의유보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6호 6호 4호 4호 4호
14	2014.2	-16대(역대 포함)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심의 -16대 시청각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심의	수정의결 원안의결	4호 4호
15	2014.5	-대통령기록관 현판 교체방향 심의 -2014년 대통령기록 자유연구과제 선정 심의	의결연기 원안의결	6호 6호
16	2014.12	-대통령기록물 효율적 공개관리 추진방안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심의	원안의결 수정의결	4호 4호
17	2015.2	-국가기록관리 3.0혁신 대통령기록관 소관 과제 보고 -대통령기록관 세종시 신청사 보존복원 체계 구축 계획 -소장 보존기간 미책정 기록물 보완 방안 보고 -대통령기록관 세종시 신청사 전시동 구축계획 -내각제하의 국무총리기록물 전시 관련 검토 보고	모두 보고안건임	

18	2015.4	-대통령기록물 보호조치 해제 보고 -대통령기록관 전시동 연출 방안 보고	모두 보고안건임	
19	2015.8	-16대 이관 녹음기록 공개재분류 결과 재심의	원안의결	4호
20	2015.12	-2015년 대통령비밀기록물 재분류 심의 -생산 30년 경과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심의	원안의결 수정의결	4호 4호
21	2016.2	-16대 비공개 비전자기록물 2년 주기 공개재분류 심의 -16대 비공개 연장 전자기록물 2년 주기 공개재분류 심의(안) -생산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심의(안)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관리규정 개정 방안 -역대 간행물(초과분) 관리 방안 심의	원안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4호 4호 4호 - 6호
22	2016.6	-역대 대통령비밀기록물 재분류(해제 또는 연장) 심의 -김영삼 전 대통령 기증기록물 일부 반환 심의	원안의결 원안의결	4호 6호
23	2016.9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공개 재분류 심의	수정의결	4호
24	2016.12	-일반기록물 중 비밀표시 기록물 처리지침 보완(안) 심의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정(안) 심의 -생산 30년 경과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심의(안) -16대 추가이관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심의(안)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6호 4호 4호 4호
25	2017.2	-대통령기록관 발전전략 및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대통령전자기록물 백업본 등 저장매체 처리계획	모두 보고안건임	
26	2017.4	-대통령 경호관련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보류	2호
27	2017.5	-대통령 경호관련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불승인, 승인, 보류	2호
28	2017.5	-대통령 경호관련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불승인, 승인	2호
29	2017.6	-대통령 비밀기록물 목록 열람 등 심의	원안 의결	6호
30	2018.2	-대통령 경호 관련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기한 만료에 따른 재연장 심의의 건	심의 연기	2호
31	2018.2	-대통령 경호 관련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기한 만료에 따른 재연장 심의의 건	원안 의결	2호

※주: 국가기록원, 「각 회차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회의록」 참고.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회의는 총 31회 개최되었다. 동전문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은 총 51건이었다. 그 가운데 2호는 11건(21.6%), 4호 27건(52.9%), 6호 10건(19.6%), 위원회 운영 관련 3건(5.95%) 등이었다. 곧 비밀 기록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의 재분류 심의가 50%를 상회하고 있다. 2호의 경우 대통령 경호 관련 기록의 이관시기 연장이 대부분이었다. 곧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기법과 관련 있는 경호 행사 기록을 계속 보존할 목적으로 이관 시기 연장 신청을 하고 있다. 6호 대통령기록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은 ‘대통령기록관 현관 교체’ 문제,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설치와 관련된 안전 등이 심의되었다.

1호 대통령기록관리 기본 정책, 3호 대통령지정기록의 보호조치 해제, 5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은 심의하지 않았다. 다만, 3호와 관련해서 제3회(2010.6), 제5회(2011.12), 제18회 회의(2015.4)의 보고안건 가운데에는 ‘대통령기록물 보호조치 해제’ 등이 있는 것으로 봐서 대통령기록관이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기록관리법에서 규정한 안전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은 물론 보고안건 대부분은 국가기록원 고유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그 결과 위원회는 국가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국가기록원의 자문기구 역할에 머물렀다.

둘째, 위원회 심의 결과가 구속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심의 결과 부결된 안전(제46회 정기회의에서 국가기록원이 제안한 기록관리 현황 평가 유예 문제에 대해 위원회가 부결시켰음)이 국가기록원장의 직권에 의해 뒤집히는 사례가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회의 결과는 구속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는 자문위원회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근본적인 한계라 할 수 있다.

셋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상정된 안전은 기록관리법에서 규정한 심의 조항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지난 10년 동안 기록공동체 안팎에서 발생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기록의 지정기록물을 대통령권한대행이 지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2017.3),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문제(2013.6) 등을 들 수 있다.

요컨대 위원회 운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위원회 상정 안건은 법령에만 기초해서 다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주요 현안들은 회피되었다. 따라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에 대한 회의가 그 운영 과정에서 증폭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가기록원. 201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록관리 혁신 T/F. 2017.12.31. 『국가기록관리 혁신 방안』.
국가기록원. 각 년도. 「제1~46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국가기록원. 각 년도. 「각 회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임시회의 결과」.
국가기록원. 각 년도. 「각 회차 시스템·프로세스전문위원회 회의결과」.
국가기록원. 각 년도. 「각 회차 전자기록관리전문위원회 회의결과」.
국가기록원. 각 년도. 「각 회차 기록서비스전문위원회 회의록」.
국가기록원. 각 년도. 「각 회차 정책전문위원회 개최결과」.
국가기록원. 각 년도. 「각 회차 표준전문위원회 회의록」.
국가기록원. 각 년도. 「각 회차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회의록」.
국가기록원. 2010.12. 「제14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곽건홍. 2014. 『아카이브와 민주주의』. 서울: 도서출판 선인.
정대영. 2015.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